

國立公園管掌部處 內務部로 決定

12月18日 第151回 定期國會서 政府案대로 通過

自然公園法中 建設部관장條項은 모두 內務部로 改正

曹溪宗, 要求條件 수용約束에 國民不便고려 注視

4 部長官의 確약받고 佛教側鎮靜

조계종은 12월 12일 긴급 종무회의를 갖고 12월 13일 오전 9시를 기해 국립공원내 3백여 사찰에서 山門 폐쇄를 단행토록하고 동월 15일 여의도광장서 개최키로한 「국립공원관리 내무부이관저지 범불교도 대회」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종무회의는 정부측이 종단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였고, 山門 폐쇄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돼 이같이 결정, 정부의 조치를 주시게 됐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에서 통과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오전 내무부·건설부·문화부·총무처 4개부처의 합의문형식으로 문화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조계종 총무원장 徐義玄스님에게 보내 「국립공원관리 주체가 건설부서 내무부로 이관되어도 자연공원법 개정이 없는한 현관리체계에는 일체의 변경이 없으며 불교계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계종측 요구인 ▲공원입장료 수입의 10~30%를 사찰에 지급 ▲국립공원을 조성 또는 개발할 경우 해당지역 사찰주지와 사전협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정부와 사찰이 합동징수 ▲국립공원위원회(현재: 건설부차관을 비롯 국토계획국장, 내무, 재무, 국방, 농수산, 교통, 문화부, 환경처, 산림청 관계국장, 조계종총무원장, 한국산악회 상임이사, 자연환경관계학계 5명, 국립공원과리공단 이사장, 한국국립공원협회 자연공원연수소장겸 공단비상근이사 등으로 구성) 민간위원의 3분의1을 종단추천인사로 구성한다는등 4개항을 정부측이 받아들인 셈이다. 국립공원 운영체계 이관문제는 12월 13일 국회행정위에 넘겨져 심의후 12.18. 151회 정기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자연공원法中 改正條文別項 參照)

각 매스콤, 조계종要求 긍정적 事實보도

한때 조계종측의 山門 폐쇄 강행결의에 대해 도하 각신문·TV방송은 대체로 조계종측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실보도에 치중했는데 12월 12일자 j일보 사설요지와 12월 13일자 H신문 박스기사 내용을 참고 자료로 산다.

極端的 방법보다 合理的 是正노력을…

관리주체결정은 전국민의 이익에 초점을 둔 국립공원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寺刹文化財의 보존이라는 대국적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 좁은땅의 소중한 국립공원이 地方行政의 利權으로 남용될 소지는 처음부터 막아야한다.

▲ 이런 결정이 단순히 地方財政의 稅收 확보나 입장료를 둘러싼 사찰과 지방행정간의 이익다툼으로 결정될 일일수는 없다.

▲ 불교계는 극단적 방법보다는 合理的 입장에서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것이고

▲ 정부또한 불교계가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를 시정하는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다.

國立公園管理, 保存次元서 다뤄야

한편 H신문은 12월 13일자 신문해설기사 「정부부처간 세확보 다툼인상」제호와 「내무부보전·관리업무 제대로 할지 의문」부제아래 자손만대로 물려줄 국립공원의 관리문제가 國土保存次元이 아닌 정부부처간의 영역다툼에 의한 결론이 나서는 안될것이라고 건설부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형태의 변천과정〉

▲ 국립공원 운영체계는 당초 公園指定과 計劃業務는 건설부가 관장하고 청소등 관리업무는 지자단체에 위임됐다.

▲ 지난 85년6월~10월사이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地自體위임관리는 1개공원이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공원의 경우 관리주체가 여럿이고 재원도 빈약해 형식적 관리에 머물고 있음이 지적됐다.

▲ 따라서 정부는 87년7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신설(註: 86년12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이를 건설부가 관장도록 하여 국립공원 운영체제를一心化했다.

이처럼 조정된 국립공원운영체계를 정부가 다시 내무부로 이관하고 더욱이 국립공원관리뿐 아니라 公園指定과 計劃業務까지도 넘기기로해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내무부이관후의 문제점〉

▲ 내무부가 국립공원을 관리함으로써 과연 국립공원의 보전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점인데 조례종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있다.

▲ 앞으로 地自體가 실시되면 각 地自團體가 자체 예산충당을 위해 공원을 개발·공원지역조성을 평계

로 콜프장, 숙박업소등 대단위 위락시설을 신축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는점.

▲ 정부조직법 부칙만을 고쳐 국립공원운영체계를 건설부서 내무부로 옮길수 있느냐는 의문—현행 정부조직법 모법에는 건설부와 내무부의 업무영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내무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업무, 특히 국토이용계획에 해당하는 공원지정과 계획업무를 관장할 아무 근거도 없다.

〈註: 이번에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었다 함〉

〈周邊정리·청소등 人力·裝備·組織 内세운 内務部서 國立公園管理局 신설할듯〉

▲ 내무부서는 이에대해 공원주변정비(註: 현재 공원주변에서 건축관계민원과 도시쓰레기와 공원쓰레기 처리등으로 공원관리상 문제점이 많음)와 쓰레기청소등 공원관리의正常화를 위해 人力, 장비, 지방조직등이 충분한 내무부가 관리하는것이 옳다고 내세우고 있다.

▲ 그러나 地自體가 실시될경우 내무부 본부기구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내무부로 가져와 국립공원관리국을 신설, 내무부의 업무영역을 넓히려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굳이 부인하지 않고있다.

自然公園法中 改正된條項

제151회 정기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통과된 자연공원법 개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自然公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 4 條第 1 項(國立公園의 指定), 第 2 項, △ 第 5 條第 2 項, 第 3 項, △ 第 7 條, △ 第10條제 1 項 내지 第 3 項, △ 第11條第 3 項. 第 4 項, △ 第14條, △ 第16條第 1 項. 第 3 項, △ 第17條第 1 項. 第 2 項, △ 第17條의 2, △ 第18條第 2 項, △ 第42條第 1 項, △ 第43條第 1 項, △ 第47條第 1 項, △ 第49條의 2 (편집자註: 國立公園관리공단의 設立), △ 第49條의 5 第 2 項, △ 第49條의 6 第 2 項(定款變更의 認可), △ 第49條의 7 (任員) 第 3 項(理事長), 第 5 項(理事), 第 6 項(監事), △ 第49條의 10, △ 第49條의 17第 2 項.

第 4 項, △ 第49條의 19, 20, 21, 22, 24, △ 第49條의 25第 1 項. 第 2 項, △ 第55條第 1 項중 “建設部長官”을 각각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第19條중 “建設部”를 “內務部”로 한다.

△ 第 7 條, △ 第14條, △ 第16條第 2 項第 2 號第 5 目·第 3 號第 5 目, △ 第21條의 2 第 3 項, △ 第23條第 1 項, △ 第25條第 3 項, △ 第26條第 3 項, △ 第27條第 2 項, △ 第36條의 2 第 2 項, △ 第36條의 3 第 2 項, △ 第38條第 5 項, △ 第49條, △ 第51條第 5 項, △ 第54條의 2 第 4 項중 “建設部令”을 각각 “內務部令”으로 한다.(편집자註: 第54條의 2는 「國立公園協會의 設立」이며 4項은 「協會의 設立·組織·運營·기타 必要한 事項은 建設部令으로 한다가 内務部令으로 改正)“